

경기도 고시 제2019-166호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 합니다.

2019. 7. 31.

경 기 도 지 사

1. 사 업 명 :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시행자 : 이천시장
3. 사업위치

사업시행자	명칭	사 업 위 치	필지수	면적(㎡)
이천시장	장평3지구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 260 일원	139	118,425

4. 지정목적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5. 지 정 일 : 2019. 7. 26.
6. 기 타 : 관계서류(토지조서 등)는 해당 사업지구의 지적소관청(시·군)에서 비치하고 있으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고시 제2019-5123호

성남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성남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 7. 31.

경 기 도 지 사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 성남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나. 조성목적

- 경공업 육성으로 지역주민의 고용촉진
- 위성도시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시민생활 안정대책 강구

다. 추진경위

- ‘68. 05. 07.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1,2공단] (건설부고시 제286호)
- ‘71. 10. 27.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건설부고시 제617호)
- ‘72. 11. 03. 성남시 도시계획 변경결정(건설부고시 제469호)
- ‘73. 12. 31.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3공단] (경기도고시 제450호)
- ‘74. 09. 07. 성남공업단지[1, 2공단] 준공
- ‘76. 11. 10. 공업단지관리법 적용대상 공업단지 지정 (대통령령 제8277호)
- ‘76. 11. 12. 성남공업단지[3공단] 준공
- ‘80. 08. 23. 사단법인 성남공업단지 관리공단 인가
- ‘81. 06. 20. 공업단지관리법 관리기관 변경[성남시→성남공업단지관리공단](대통령령 제10363호)
- ‘82. 10. 29.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구획고시 (상공부고시 제40호)
- ‘86. 05. 21.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구획고시개정 (상공부고시 제19호)
- ‘86. 07. 30.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구획고시개정 (상공부고시 제27호)
- ‘86. 09. 25.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구획고시개정 (상공부고시 제34호)

- ‘87. 05. 04.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구획고시개정 (상공부고시 제13호)
- ‘91. 06. 30.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구획고시 (경기도고시 제245호)
- ‘93. 05. 20. 지방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경기도고시 제144호)
- ‘94. 06. 20. 지방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 (경기도고시 제166호)
- ‘00. 11. 13.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 (경기도 고시 제265호)
- ‘01. 02. 12.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 (경기도 고시 제22호)
- ‘01. 04. 30.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경기도 고시 제65호)
- ‘04. 10. 11.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 (경기도 고시 제293호)
- ‘06. 06. 12.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 (경기도 고시 제176호)
- ‘08. 12. 15.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 (경기도 고시 제506호)
- ‘13. 04. 26. 성남 일반산업단지(제1산업단지)지정 해제 고시 (경기도 고시 제110호)
- ‘15. 11. 30. 성남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5-5202호)
- ‘16. 07. 29.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6.57176호)
- ‘17. 07. 20. 성남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7-5190호)

라. 분양현황

구 분	분양대상 (㎡)	분 양 가 능 면 적(㎡)			조 성 기 간	조성기관
		계	분 양	미 분 양		
계	1,184,862	1,184,862	1,184,862	—	68. 5. 7~76.11.12 89. 1. 6~90. 9.10	성남시
산업시설구역	1,164,639	1,164,639	1,164,639	—	"	"
지원시설구역	20,223	20,223	20,223	—	"	"

마. 입주현황

구 분	입 주 업 체 수			면 적 (㎡)		
	계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계	3,152	3,144	8	1,184,862	1,164,639	20,223
2015. 12월 말	3,152	3,144	8	1,184,862	1,164,639	20,223
향 후 계 획	—	—	—	—		

바. 입지여건

- 교통 : 단지내 도로 18Km(하천 복개도로 1.9Km 포함)
 -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성남IC(4Km), 경부 고속도로 판교IC(10Km)
 - 국도 3번(남해↔성남↔초산) , 지방도 308번(성남↔양평)
- 용수 : 팔당댐을 수원으로 복정정수장에서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동시 공급(8,100톤/일)
- 항공 및 항만 : 김포공항(50Km), 인천국제공항(80Km), 인천항(60Km)
- 전력 및 통신 : 전력(60,000Kw), 통신(35,000회선)
- 환경기초시설 : 업체별 개별처리
- 에너지 공급 : 대한 도시가스에서 LNG공급

2.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관리 계획

1) 기본방향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 제39조 근거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를 입주시켜 생산 활동 지원
- 산업용지는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부득이한 경우 산업시설구역 중 일부는 물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함

- 경쟁력이 약화된 경공업 중심의 단지를 첨단산업(연구개발, 지식·정보통신등의 벤처기업) 단지로 재배치 될 수 있도록 유도

2) 추진방향

- 공장시설 용도를 업종별(섬유,화학,기계 등)로 세분하여 배치 및 관리
- 업종별 배치에 맞는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
- 환경오염 및 공해업소 이전 유도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

1) 용도별 구획면적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1,512,886 (100%)	1,164,639 (77.0%)	20,223 (1.3%)	241,336 (16.0%)	86,688 (5.7%)

□ 산업시설구역 세분화

구 분	합 계	공장시설	물류시설	기 타
면 적(㎡)	1,164,639	1,159,681	4,958	-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 1호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그 관련시설(이하 “건축물”이라 함)
- 물류시설구역에서 보관 및 창고업, 하역 및 운송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물류시설 관련 건축물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

나)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산집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기관이 입주 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문화시설, 운동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게임관련 시설, 무도교습소 및 무도학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안마원은 설치 제외

다)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라)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구획평면도 : 별표1

다. 업종별 배치 계획

1) 업종별 배치 현황

구 분 업종별	배 치 계 획		2015. 12월 말		향 후 계 획	
	업체수	면 적(m ²)	업체수	면 적(m ²)	업체수	면 적(m ²)
계	3,152	1,164,639	3,152	1,164,639		
음 식 료	291	119,821	291	119,821		
섬유·의복	261	73,473	261	73,473		
목재·종이	100	79,539	100	79,539		
석유·화학	233	78,277	233	78,277		
비 금 속	48	29,157	48	29,157		
철 강	5	180	5	180		
기 계	357	58,519	357	58,519		
전기전자	1,136	343,662	1,136	343,662		
운송장비	19	1,406	19	1,406		
기 타	127	88,036	127	88,036		
비 제 조	585	292,569	585	292,569		

라. 입주관리 계획

1) 입주대상 업종

(기정)

- 가) 산집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
- 나) 산집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
- 다)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 라)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
- 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 바) 산업시설 내 물류시설구역에서 보관 및 창고업(52101, 52102), 운송업(여객운송업 제외)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 사) 비 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 아) 입주업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 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 차)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토지가 아닌 건물 옥상에 배치)
- 카)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토지가 아닌 건물 옥상에 배치)

※ 입주 대상 업종이라 할지라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종 악취방지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에 의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종은 입주를 제한한다.(단, 공단 내 기존에 특정유해물질 배출 인·허가 받고 공장을 가동 중인 업체는 그렇지 아니한다.)

(변경)

- 가) 산집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
- 나) 산집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
- 다)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 라)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
- 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 바) 산업시설 내 물류시설구역에서 보관 및 창고업(52101, 52102), 운송업(여객운송업 제외)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 사) 비 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 아) 입주업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 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 차)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토지가 아닌 건물 옥상에 배치)
- 카)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토지가 아닌 건물 옥상에 배치)
- ※ 입주 대상 업종이라 할지라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업종,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업종 악취방지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에 의한 환경오염물질을 발생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종은 입주를 제한한다.(단,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한 입주는 제한하지 않는다.)
- 2) 입주제한 업종
- 가) 별표2에 따른 입주제한 업종
- ※ 이하 관리기본계획 내용은 성남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고시(경기도 고시 제5173호, '16.7.29.)와 동일함.

경기도 공고 제2019-1226호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7. 31.
경 기 도 지 사

1. 변경일자 : 2019. 7. 31.
2. 관리계획의 변경 주요내용

시설명	사 업 시행자	위 치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양주 육군 제7771부대	국방부장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산47-3일원	토지형질 변경면적	81,857	76,095.82	감) 5,761.18
			건 축 연면적	16,713.09	14,979.79	감) 1,733.3

3. 열람장소
 - 가. 경기도 도시주택과(031-8030-4195)
 - 나. 양주시 도시계획과(031-8082-6691)
4.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끝.